

인 · 허가 비리 척결에 있어 건축사의 역할

The Role of Architects in Exposing Unlawful Registration and Licensing

리인철 / (주)새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In-Cheol

생각1. 공화심(共和心)과 종도록주의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위위심(爲爲心,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위위심이 자기 만족에만 국한되면 이기심(利己心)이요 타인을 위해서만 성립된다면 이타심(利他心)이 된다. 이기심이 지나치면 도덕이 무너져 혼탁한 사회가 초래되고 이타심만 강조된다면 자기희생이 전제가 되므로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사회(全體主義社會)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인 도덕성이 동시에 유지되려면 이기심과 이타심이 잘 조화되는 공통분모적인 중용(中庸)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공화심(共和心)이라 한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 존립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나와 나를 포함한 사회가 균형적으로 화합하는 공화심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개념이다.

그런데 공화심의 탈을 쓰고 마치 나와 타인을 위해 최선인 것처럼 위장한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주의주장(主義主張)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종도록주의」라 한다. 이 사회가 너와 나만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사회라면 「종도록주의」는 아무 비판없이 최선의 덕목일 수 있지만 이 사회가 너와 나만이 아닌 다수의 제3자가 포함된 공화체(共和體)라면 「종도록주의」는 어쩌면 이 사회를 망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생각2. 대중적이면서도 자기표현을 해야 하는 건축사

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 문화인 의·식·주 3대 문화중 주생활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실행적 실체이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은 단순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거의 절대적인 핵심체이며, 자연의 파노라마 속에서 그 시각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수단이다.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영향을 주고 새로지어진 건축물은 다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의식이 건축사조(建築思潮)를 낳았고 건축사조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이러한 반복되며 변화되는 현상이 건축문화

사(建築文化史)이며 한시대의 건축문화는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이념 등이 조영(照映)되기 때문에 그시대의 총체적인 문화를 비추는 거울도 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심미안적 차별성을 요구하는 현대건축에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주체는 대중이요 사용자들이지만 이들을 선도하는 이는 건축사다.

건축사의 철학적 사고나 안목 또는 노력여하에 따라 건축물을 편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창작할 수도 있지만 처치곤란한 괴물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다. 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려고 하는 건축사는 자기표현을 하는 진정한 예술가이지만 처치곤란한 괴물덩어리를 설계하면서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축사는 악덕 사업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는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도 건축설계를 통해 자기표현을 해야만 한다.

생각3. 건축사의 자기표현을 방해하는 요소인 『중도록주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개념을 한정시키는 요소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주변환경을 포함한 대지형상이고, 둘째는 설계프로젝트의 사업성, 즉 건축주의 요구조건이고, 셋째는 건축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법규이다. 그런데 건축사의 설계개념을 한정시키는 네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그 네번째 요소는 바로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처분권행사이며 여기에 부가하여 건축심의위원의 선결적인 심의방향이다.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은 건축 인·허가에 관한 공익을 전제로 없는 법을 만들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핑계로 불법적으로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회와 짜고 법에도 없는 불필요한 건축심의를 상정하여 건축물의 층수나 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건축주의 사업계획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그릇된 처분권행사의 배경은 좋은게 좋은 것 이라는 「중도록주의」이고 중도록주의의 목적은 뇌물이다.

법에도 없고 이론적 근거도 없는 단순히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설계하라” 하며 시간을 질질 끈다. 공무원의

시간끌기에 지친 설계자나 건축주가 그 공무원에게 “좋은게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 안되지만 성의니까 받아주세요”라고 하며 뇌물을 주고 그 공무원은 못이기는 체하며 그 뇌물을 받는다. 공무원의 유도로 「중도록주의」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중도록주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건축허가신청부지 현장에도 안가본 심의위원의 가공할만한 심의결과가 기다린다. “스카이라인이 심하게 훼손되니 건물층수를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낮출 것” ……

이렇게 행정상 ‘기속처분권’과 ‘기속재량처분권’을 ‘자유재량처분권’화 하며 이것을 「중도록주의」와 합성하는 것이 건축 인·허가 비리의 원리(原理)인 것이다.

생각4.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

건축사에게는, 건축사가 건축활동을 하는 기반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주를 만족케 하는 이타심이 있고 또한 자기표현을 극대화하여 건축물을 예술창작품으로 빛어냄으로써 자기완성을 하려는 뚜렷한 이기심이 있다.

그런데 건축은 건축주와 건축사를 포함한 대중 및 그 시대문화의 영향을 주는 실행적 실체이므로 이타심과 이기심이 잘 조화된 공화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화심의 탈을 쓴 「중도록주의」는 공무원의 처분권을 오용(誤用)케 함으로써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황폐화시키며 건축주의 사업을 망치고 결국 이 시대의 건축풍토를 해치는 건축 인·허가 비리의 근원이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건축사가 스스로 「중도록주의」를 타파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비리 척결에 앞장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필자가 아산시청의 건축 인·허가 부정부패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것은 나를 희생시키려는 이타심이지만 그 희생은 결국 우리 건축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음으로써 건축사의 건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건축문화를 제고하는 공화심에 기인된 것이므로 우리 건축사들의 동참을 기대한다.